

검색...



원산지 FAQ

이 페이지의 최종 업데이트 시점: 2개월 전

공유



in

f



다음은 식품 원산지 규정에 대해 자주 묻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세한 사업체용 안내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 원산지 규정

이 규정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어디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

이미 매장 진열대에 있는 재고는 적용을 면제해 주는 조항이 규정에 들어 있나?

주요 정의

어떤 식품 품목이 규정 적용 대상인가?

어떤 것이 신선식품인가?

어떤 것이 신선식품이 아닌가?

최소 가공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어떤 것이 염지 돼지고기에 들어가나?

어떤 정보를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 사항

어떤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고지 정보에 재배, 사육, 포획 또는 채취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하나?

원산지 주나 지역만 고지해도 되나?

나는 뉴질랜드 재배자인데 현재 포장에 내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어떤 형식으로 정보를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 사항

원산지 정보는 어떻게 고지해야 하나?

글꼴 색깔, 글꼴 크기, 사용해야 하는 특정 문구 등 구체적인 고지 요구 사항이 있나?

원산지 고지를 제품 포장에 해야 하나?

광고물이나 온라인상에 원산지를 고지해야 하나?

온라인으로 원산지를 고지하면 품목 공급 시 이것을 다시 고지해야 하나?

포장의 어느 부분에 원산지 정보를 고지해야 하나?

정식 국가 명칭 대신 NZ 또는 USA와 같은 약칭을 사용할 수 있나?

국가명 대신 원산지 국가 지도를 넣을 수 있나?

특별한 상황

카페, 레스토랑, 학교 바자 행사에도 규정이 적용되나?

연회업체에도 규정이 적용되나?

허용되는 특별한 상황이 규정에 나오나?

일반적인 질문

취급하는 식품 품목이 규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손님이 알고 싶어하므로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고 싶다. 준수해야 할 요구 사항이 있나?

식품 원산지 규정

문: 이 규정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답: 소비자 정보 표준(식품 원산지) 규정 2021(이하 '규정')은 일부 신선식품, 해동식품, 냉동식품 및 염지 돼지고기에 대한 특정 정보의 고지를 요구합니다. 정보에는 식품이 재배, 사육, 포획 또는 채취된 국가나 해양이 명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문: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답: 2022년 2월 12일부터 신선식품과 해동식품에 적용되었고 2023년 5월 12일부터 냉동식품에 적용됩니다.

문: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답: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1986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상사위원회는 해당 판매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해 위배 행위 건당 \$1,000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중대한 위배 행위에 대해서는 상사위원회가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해당 사업체는 위배 행위 건당 최대 \$30,000의 벌과금을 물 수 있습니다. 개인은 건당 최대 \$10,000의 벌과금을 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사실을 표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13조 (j)호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 위배 행위는 훨씬 강한 처벌을 수반하는데 사업체는 건당 최대 \$600,000, 개인은 최대 \$200,000의 벌과금을 물 수 있습니다.

문: 어디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

답: www.legislation.govt.nz에서 온라인으로 **식품 원산지 규정**과 **공정거래법**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귀하의 사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겠다면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업체용 안내 지침은 상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이미 매장 진열대에 있는 재고는 적용을 면제해 주는 조항이 규정에 들어 있나?

답: 아닙니다. 규정이 시행되는 시점에 적용 대상 품목에 들어가는 모든 식품의 재고는 적절한 원산지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제품 포장에 원산지 정보를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밖의 다른 방법(품목 표면부이나 라벨, 품목 옆 안내판에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으로 고지해도 됩니다.

주요 정의

문: 어떤 식품 품목이 규정 적용 대상인가?

답: 다음과 같은 과일, 채소, 육류, 어류 및 조개류가 적용 대상입니다.

한 가지 종류(예: 완두콩과 옥수수가 혼합된 패킷은 해당되지 않음)의 신선, 해동 또는 냉동 식품이면서 최소한으로만 가공된 것

염지 돼지고기도 적용 대상이며 규정의 '과일 또는 채소'의 정의에 구체적인 식품 품목이 나열됩니다.

문: 어떤 것이 신선식품인가?

답: 보존 목적이나 섭취 가능 기간 연장 목적의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은 신선식품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규정에 따르면 냉장, 냉각, 표면 처리, 진공 밀봉 또는 냉동 전 데치기와 같은 일부 가공을 했다고 해서 '신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표면 처리는 식품의 본질적인 특성이나 맛, 영양성분을 바꾸지 않고 식품 표면에 어떤 물질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 어떤 것이 신선식품이 아닌가?

답: 신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식품 가공의 예로는 건조, 염지, 발효, 절임, 훈연, 재구조화, 보존(소금, 설탕 또는 기름을 사용), 통조림 및 익힘(단, 냉동 전 데치기는 제외) 등이 있습니다.

문: 최소 가공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답: 최소 가공에는 예를 들어 자르기, 잘게 썰기, 얇게 썰기, 깎둑 썰기, 다지기, 갈기, 으깨기, 즈 짜기, 블렌딩, 푸레 만들기, 살 발라내기, 뼈 제거, 탈각, 껍질 벗기기, 세척, 소독 또는 방사선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공 과정을 거친 규정 적용 대상 식품은 원산지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염지 돼지고기는 항상 원산지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문: 어떤 것이 염지 돼지고기에 들어가나?

답: 규정에서 정의하는 염지 돼지고기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의 가공 돼지고기 제품을 말합니다.

1. 제품 중량의 최소 30%가 돼지고기 살인 베이컨이나 햄 제품
2. 최소 66%(중량 기준)의 돼지고기 살에다 보존제로 소금이 든 가공 돼지고기 제품.
보존제로 아질산염이나 질산염(또는 둘 다)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슈토 또는 돼지고기 절임이 이러한 제품에 해당됩니다.

염지 돼지고기의 전체 정의는 식품 원산지 규정의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염지 돼지고기 제품의 원산지 정보는 돼지를 염지한 국가가 아니라 사육한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 햄에 대해 '캐나다산 돼지고기로 뉴질랜드에서 제조'라고 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정보를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 사항

문: 어떤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답: 어떤 식품 품목이든 규정 적용 대상이면 다음의 원산지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과일과 채소	재배 국가(1개 국가 또는 여러 국가)
육류와 염지 돼지고기	사육 국가(1개 국가 또는 여러 국가)
어류 및 조개류	품목이 포획되거나 채취된 국가(국가 어업 관할권을 보유한 1개 국가 또는 여러 국가)나 공해

문: 고지 정보에 재배, 사육, 포획 또는 채취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하나?

답: 고지 정보에 넣어야 하는 정해진 문구는 없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고지 정보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영어 또는 마오리어로 된 명확하고 알아볼 수 있는 문자 형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 품목의 판매 또는 판매 제의를 받거나 그 광고를 보는 사람이 고지된 국가(1개 국가 또는 여러 국가)나 해양(1개 해양 또는 여러 해양)과 이 품목이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품목과 국가/해양 간의 연결성은 명확해야 합니다. 재배, 사육, 포획 및 채취와 같은 용어는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 원산지 주나 지역만 고지해도 되나?

답: 아닙니다. 규정에 의거, 국가나 해양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지역이나 주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 나는 뉴질랜드 재배자인데 현재 포장에 내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답: 아닙니다. 고지 정보에는 이 품목이 재배된 국가의 이름이 있어야 하며 품목과 국가 간의 연결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정보를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 사항

문: 원산지 정보는 어떻게 고지해야 하나?

답: 영어 또는 마오리어로 된 명확하고 알아볼 수 있는 문자 형식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원산지 정보가 그 식품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명확히 나타나게 고지해야 합니다.

문: 글꼴 색깔, 글꼴 크기, 사용해야 하는 특정 문구 등 구체적인 고지 요구 사항이 있나?

답: 아닙니다. 영어 또는 마오리어로 된 명확하고 알아볼 수 있는 문자 형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정보 고지 방법이 규정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어든 마오리어든 반드시 넣어야 할 정해진 문구('product of'와 같은)는 없습니다. 규정에는 품목과 국가/해양 간의 연결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grown in'(재배지) 또는 'raised in'(사육지)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품목과 국가 간의 연결성을 명확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문: 원산지 고지를 제품 포장에 해야 하나?

답: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는 원산지 국가/해양과 품목 간의 연결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매자는 원산지 정보가 해당 식품 품목 가까이에 명확하게 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식품 품목이 매장 내에서 판매되는 경우, 원산지 정보는

품목 표면부나 포장 또는 품목 옆 안내판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문: 광고물이나 온라인상에 원산지를 고지해야 하나?

답: 그렇습니다. 식품 품목의 판매 제의/광고를 할 때(예를 들어 브로셔 또는 온라인에서와 같이 판매 제의/광고가 식품 품목 소재지와 동일한 위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산지 정보가 판매 제의/광고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 온라인으로 원산지를 고지하면 품목 공급 시 이것을 다시 고지해야 하나?

답: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품목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품목 판매 계약이 이루어지고(예: 웹사이트에서) 이 계약에 따라 품목이 공급되는 경우, 품목 공급 시 원산지 정보를 반복해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품목을 온라인에서 광고하지만 매장에서도 판매한다면 매장에 원산지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문: 포장의 어느 부분에 원산지 정보를 고지해야 하나?

답: 포장의 어느 부분에 원산지 정보를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은 없으며, 일부 품목은 포장 없이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방법(품목 자체나 라벨, 품목 옆 안내판에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으로 고지해도 됩니다. 규정에는 고지 정보와 품목 간의 연결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 정식 국가 명칭 대신 NZ 또는 USA와 같은 약칭을 사용할 수 있나?

답: 약칭 사용에 대해서는 규정에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상사위원회의 주요 고려 사항은 원산지 국가가 어디인지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는지 여부입니다. 잘 알려진 약칭은 허용될지 모르지만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약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 국가명 대신 원산지 국가 지도를 넣을 수 있나?

답: 아닙니다. 규정에 따르면 영어 또는 마오리어로 된 문자 형식으로 원산지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

문: 카페, 레스토랑, 학교 바자 행사에도 규정이 적용되나?

답: 아닙니다. 이 규정은 레스토랑, 카페, 테이크어웨이 가게, 구내 매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즉시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품을 판매, 판매 제의 또는 판매 광고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금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연회업체에도 규정이 적용되나?

답: 아닙니다. 이 규정은 연회업체가 즉시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품을 판매, 판매 제의 또는

판매 광고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 허용되는 특별한 상황이 규정에 나오나?

답: 그렇습니다. 원산지 정보를 고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요구 사항에는 몇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정보를 고지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서, 다음과 같이 제12~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2조 공급 시점이 될 때면 원산지가 변경될 경우의 추가 정보

제13조 매장 간 원산지가 서로 다를 경우의 대체 정보

제14조 원산지가 자주 변경될 경우의 선택적 대체 정보

제15조 육류 또는 염지 돼지고기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될 경우의 선택적 대체 정보

일반적인 질문

문: 취급하는 식품 품목이 규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손님이 알고 싶어하므로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고 싶다. 준수해야 할 요구 사항이 있나?

답: 사업체는 취급 식품이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식품 원산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원산지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 **보도자료 구독**

✉ **소식지 구독**

위원회 소개

뉴스 및 미디어

심의 사건 등록부

웹사이트 이용 정보

✉    